

서울고등법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23나2042561 주식인도청구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상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상훈, 이산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1가합557295 판결
변론종결	2024. 1. 25.
판결선고	2024. 3.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70,524,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3,918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위 주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438,816,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또는 피고의 퇴사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퇴직하였으므로, 비록 원고가 2년의 재직요건을 갖추기 전에 퇴직하였더라도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에서 재직요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에서 임직원이 사망, 정년퇴직, 임원으로의 승진 및 임원이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에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까지 위 조항에서 열거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강행규정이자 효력규정인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의 취지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피고 정관 제9조의3 제5항 제1호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피고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또는 피고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퇴직하였으므로 피고 정관에서 정한 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는 위법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2년 재직요건의 예외 해당 여부

가) 이 사건 계약 제4조는 본문에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그 부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19. 10. 19.부터 2022. 10. 18.까지로 하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단서에서 위 재직요건의 예외로 ‘임직원이 사망, 정년퇴직, 임원로의 승진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와 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인 2017. 10. 19.로부터 2년이 되기 전인 2018. 5. 31. 피고에서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퇴직사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재직요건의 예외사유인 ‘임직원의 사망, 정년퇴직, 임원로의 승진, 임원의 임기만료’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2년 재직요건의 예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2년 재직요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은 강행규정이자 효력규정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이 사건 계약 제4조에서 정한 예외사유 외에도 위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조항에서 정한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의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상법 및 벤처기업법 규정은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관이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통하여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6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참조), 정관이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재직요건의 예외사유를 축소·제한함으로써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6항의 재직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관철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이 강행규정이자 효력규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퇴직 해당 여부

설령 이 사건 계약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직기간 예외사유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앞서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6항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관하여 재직요건을 둔 취지에 비추어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은 위 취지에 부합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위 시행규칙 조항에서 정한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 임직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하는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벤처기업법에서 정한 재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회사와의 합의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벤처기업법에서 재직기간을 둔 취지에 반하는 점, 위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조항에서 ‘책임 없는 사유’의 예시로 ‘사망’, ‘정년’을 들고 있는데, 위 사유들은 모두 임직원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점, 벤처기업법 제11조의3 제9항에서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제1호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를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는 정리해고 또는 부당해고 등과 같이 임직원이 그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조항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고 임직원의 사직 의사표시를 피고가 수용함에 따라 합의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임직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제안하면서 퇴직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피고의 제안을 수용하여 피고와 이 사건 확약을 체결한 후 6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서 퇴직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 과정에서 피고의 기망, 협박, 강요 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퇴직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을 세무서에 신고하면서 작성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

급명세서에는 퇴직사유가 ‘자발적 퇴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의 퇴사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효력을 다투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④ 피고가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정만으로 원고의 퇴직이 해고 또는 비자발적 퇴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

가) 위 기초사실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정관 제9조의3 제5항은 제1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를, 제4호에서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은 ‘임직원이 사망, 정년퇴직, 임원으로서의 승진 및 임원이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가 2018. 5. 31. 퇴직함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제8조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9. 4. 15. 이사회결의로 원고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퇴직이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외사유인 ‘임직원의 사망, 정년퇴직, 임원으로서의 승진, 임원의 임기만료’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의 아무런 주장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 정관 제9조의3 제5항 제1호 및 제4호,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취소사유는 강행규정이자 효력규정인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의 취지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또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조항을 강행규정이자 효력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정관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재직요건 및 취소사유의 예외사유로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재직요건의 예외사유를 축소·제한하는 것이 허용될 뿐 아니라, 임직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퇴직이 위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조항에서 정한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사유를 규정한 위 정관 규정 및 계약 조항이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의 취지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이양희 김규동